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681
----------	------

제출년월일 : 2008. 5. .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 2008년 하반기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관” 개관 예정에 따라 기존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조례로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칭 및 소재지 구분(안 제2조 및 제2조의 2)

-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을 통칭 “복지시설”로 정의함.
- 안산시 근로자 시민문화센터와 안산시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함.

나. 시설사용료 구분(안 제6조)

- 문화센터는 별표 1을, 복지관은 별표 2를 적용토록 함.

□ 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근로자복지기본법

□ 예산수반사항 : 163,216천원

- 물품구입비 61,282천원
- 위탁관리비 101,934천원(연간 203,868천원중 2008년 소요예산은 1/2)

□ 사전예고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08. 4. 15. ~ 2008. 4. 25 .(1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산업지원사업소 별관 위탁관리 운영계획
-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안산시 근로자 · 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근로자 · 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산시 근로자 · 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명칭)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은 안산시 근로자 · 시민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와 안산시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2조의2(위치) 복지시설 중 문화센터는 선부광장길 2(선부동)에, 복지관은 공단길 74(원시동)에 둔다.

제3조 본문 중 “안산시 근로자 · 시민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는”을 “복지시설은”으로 하고,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센터”를 “복지시설”로 하고, “다만, 시장이 문화센터의”를 “다만, 「근로자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시장이 복지시설의”로 하며, 제2항 중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문화센터의”를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지시설의”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법 제4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중 “문화센터”를 “복지시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센터는”을 “복지시설은”으로 하고, 제2항 중 “문화센터”를 “복지시설”로 후단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를 “문화센터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을 적용하고, 복지관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2를 적용한다.”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복지시설의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신청의 허가는 접수순에 의하되 관내 기업체의 근로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매월 첫 근무일에 다음달의 사용신청을 접수한 결과 동등한 신청 자격자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공개 추첨으로 결정한다.

⑤ 강좌의 수강 승인은 수강신청기간 종료 후 공개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문화센터”와 제2항 및 제2항제3호 중 “문화센터”를 각각 “복지시설”로 하고, 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의2 제1호 나목 중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를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로 하고, 제2호 중 “사용자가 사용 개시일 전에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를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센터의”를 “제3조에 따른 복지시설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타”를 “관련”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복지관은 개관일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소관실과		기업진흥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담당 직위,성명	노정담당 최호규
	담당자 성명,전화	신성철 (481-2283)

[별표 1]

근로자 시민 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원)	비 고
다목적실(강당)	1일 2시간	50,000	
부대 시설	영사기	"	20,000
	조명시설	"	20,000
중소회의실	"	10,000	
체육시설	월 / 1인	20,000	
취미·재취업교실	월 / 1인	무료	-
시민도서실	-	무료	-
수익사업시설 (구매시설)	-	공유재산 임대 사용료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주차료	-	30분당 500원	문화센터 사용시 최초 1시간 무료

[별표 2]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관 시설 사용료

구 分	사용기준	사용료(원)	비 고
대교육장	1일 2시간	20,000	
영사시설	"	20,000	기본시간 초과시 매 시간마다 기본 사용료의 25% 가산
소교육장	"	10,000	
취미·재취업교실	월 / 1인	무료	-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안산시 근로자 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3조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근로자복지시설의 명칭은 “안산시 근로자 ·시민문화센터”라 하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6 - 9번지에 둔다.	제2조(명칭)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은 안산시 근로자 ·시민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와 안산시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 신설 〉	제2조의2(위치) 복지시설중 문화센터는 선부 광장길 2(선부동)에, 복지관은 공단길 74(원시동)에 둔다.
제3조(기능) 안산시 근로자 ·시민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3. (생략) 4. 기타 근로자·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체육사업	제3조(기능) 복지시설은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제4조(운영) ① 문화센터의 운영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복지시설 다만, 「근로자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시장이 복지시설의

현 행	개 정 안
7조(사용제한) ① (생략) 1.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문화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생략) 3.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센터에의 입장을 제지하거나 강제로 퇴장 시킬 수 있다. 1.~2. (생략) 3.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문화센터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7조(사용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복지시설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② 복지시설 1.~2. (현행과 같음) 3. 복지시설
제8조(사용료 감면) (생략) 1. (생략) 2.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감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제8조의2(사용료 반환) (생략) 1. (생략) 가. (생략) 나.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다. (생략) 2. 50퍼센트 반환 :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전에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8조의2(사용료 반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 (현행과 같음) 2.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9조(강사)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센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강사) ① 제3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관련
제11조(준용) - 제12조(시행규칙) (생략)	제11조(준용) - 제12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